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고 제2026 - 2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의 연임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고문 위촉 및 운영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 신설 (안 제6조)

나. 입법·법률고문 위촉승낙서 및 위촉장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참조 : 의회사무국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5, 전화 : 02)3425-7388, FAX : 02)3425-7292, E-mail : tnk10@gangdo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